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근대조약의 비교를 통해 본 조청관계

-해양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효 홍

문학석사학위논문

근대조약의 비교를 통해 본 조청관계

-해양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세 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효 홍

장효홍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4일



주심 문학박사 이근우 (인)

위원 역사학박사 조세현 (인)

위원 문학박사 박원용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의 검토	3
3. 연구현황 및 연구방향	8
II. 본론	11
1. 청과 조선의 첫 개항	11
(1) 청의 해금 정책과 개해	11
(2) 조선의 쇄국정책과 조선말의 변화	14
2. 조약을 통해 본 청과 조선의 권익 상실	17
(1) 영사재판권	19
(2) 협정관세	21
(3) 개항장	23
3. 조청 관계의 변화	25
(1) 전통적 관계의 균열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28
(2) 근대적 관계의 성립	

-- 「한청통상조약」	32
4. 체제 전환중의 해양관계	35
(1) 해관	40
(2) 해운	41
(3) 해군	44
(4) 조난 구조	46
(5) 어업	47
IV. 결론	50
參考文獻	55



근대 조약의 비교를 통해 본 조청 관계

-해양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장 효 흥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요 약

조선과 청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이며, 예로부터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조선이 건국되고부터, 1895년 청일전쟁 때까지의 약 500여 년간 조선 왕조는 중국의 명, 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묘하게 변화되어갔다. 특히, 19C 아편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조선과 청나라는 서양 열강에 의해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었고, 양국 관계도 복잡하게 전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과 청이 조약을 통해 양국이 어떤 해양관련 조항을 맺었으며, 양국 간의 해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조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조선과 청은 조공관계였는데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서서히 빼기게 되었다. 조선과 청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의 열강과 일본 등에 의해 여러 강제 조약을 맺었고, 자주권마저 잃어버렸다. 「난징조약」은 중국 근대사의 시작과 근대 중국이 외부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조약이다. 난징조약 체결 이후, 약 20년 동안 청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와 「텐진조약(天津條約)」과 「베이징조약(北京條約)」 등을 맺었다. <난징조약>은 조계의 설치를 통해서 영국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위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또한, <텐진조약>을 통해 영사재판권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무역과 군사 활동을 가능케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베이징조약>의 경우, 청국을 더 잘 통제하고 청국 국민들을 더 노예화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과 일본간의 <강화도조약>은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있어 시발점이 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해 조선은 더 전면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었다. 청나라의 쇠퇴로 인하여 종속 관계하에 있던 조선 왕조도 많이 몰락하게 된 것이다. 1876년 일본이 운요호사건을 핑계로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개항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자유무역, 관세면제,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 조사할 권리 등을 얻었다. 열강의 침략이 심해졌고, 동시에 조선 국민들의 자주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이에 따라, 조선과 청은 열강의 침략과 국민의 요구 속에 힘이 없어졌으며, 양국 관계도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조청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과 「한청통상조약(韓

淸通商條約)은 조청 관계 변화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약이다. 즉, 한청 관계 변화는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청일전쟁 후 1898년 양국이 맺은 「한청통상조약」의 비교를 통해서 제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임오군란 및 갑신정변 이후에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변화를 계기로 청국 정부에 대해 상권을 더 확장하려 하였으며, 청국 상인에 대한 수출도 본격화되었다. 청은 상병정책, 해관지배정책 등을 수단으로 청국 상인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청과 조선이 종주국과 속국관계라 규정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요구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많이 약해졌으며 조선에 대한 통제도 약화되었다. 연이어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조약의 해관, 항운, 어업, 조난구조, 해군 등의 내용을 비교했는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을 때 두 나라는 종속관계였지만, 「한청통상조약」을 맺을 단계에서는 양국간의 평등해진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결론은 각 조항에 대한 비교 중에서 나온 것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해관관세뿐 아니라, 어업관련 조항에서도 청에 유리한 조항을 맺었고, 해군조항의 경우 청나라 군함의 순찰도 허락하였다. 하지만,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될 때 와서는 홍삼 등의 관세에 대해 새로 규정하는가 하면, 조선 국내에서의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두었으며, 해군조항에서도 더 이상 청나라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평등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결과 한국과 청나라 간에는 수백 년 간의 종속관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수평적인 평등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The Relationships between Chosun and Qing Viewed From The
Modern Times Comparison Of The Treaty
—Center Around The Marine-Related Terms**

Zhang Xiao Hong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ina and Korea are neighbours, with thousands of years of friendly exchanges at sea. From Korea dynasty was founded, until the Qing China-Japan war in 1895, nearly 500 years, Korea and China's Ming and Qing dynasty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But during this period, Korea dynasty and China in subtl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late Qing dynasty, because of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Korea and the Qing dynasty were being forced to open its ports,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complicated. This paper mainly from the treaty, through to the China-Korea and the two countries signed a series of Marine related items treaties with the western powers in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Marin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to understand the state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cus on China and Korea closed ocean policy and affiliatio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how to collapse. Explain the ocea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which the effect of external force and Marin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what kind of impact on each other. Through the 'Treaty of Nanjing', China opened the prelude of the modern history, China started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This after nearly 20 year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British,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others signed the 'Treaty of Tianjin' and 'Treaty of Beijing', etc. The 'Treaty of Nanjing' through the

concession in the settings, for British traders provides the trading platform. The 'Treaty of Tianjin' also provides a platform for trade and military powers of the activity. Signing of the 'Treaty of Beijing' make the Qing dynasty more control by the western powers. Korea and Japan signed the 'Treaty of Ganghwa' admitted Japanese has the extraterritoriality and right to freedom of survey of coastal, became the beginning of Japan's colonial aggression with Korea. The 'USA-Korea Treaty of 1882' is a sign of Korea more comprehensive portal open. The just powers of invasion, Korea's domestic people seek independent calls will gradually increase. The Qing dynasty of suzerainty loses power,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have changed dramatically. These changes have brought the fundamental change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war of 1894 Qing-Japan. In modern times, between of the Qing and Korea dynasty has signed a lot of treaties, but 'China-Korea Treaty of 1882' and 'Trade Treaty of China-Korea' are representative of the treaty, reflected the change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fter the Imo Incident and Gapsin Coup Qing dynasty more reinforced to Korea's political influence. The Qing China used the customs control policy measures to help the China merchants gain maximum benefit. But after the war of Qing-Japan, Qing dynasty went to weak, China's rule in the Korea also weakened. In this paper the two treaties on customs, shipping, fishery, shipwreck, navy, etc, it can be seen that Qing China is still Korea's suzerain when signed the 'China-Korea Treaty of 1882'. Bu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already turned into the relations of equality when signed the 'Trade Treaty of China-Korea'. In the 'China-Korea Treaty of 1882', the terms of the content customs duties, fishery, etc are tend to the interests of the Qing dynasty, even allow inspections of the Qing dynasty navy fleet. The 'Trade Treaty of China-Korea' rules on the products of tariffs. For the businessmen of Qing dynasty in the Korean domestic also proposed restrictions on their activities. At the same time, the Qing dynasty navy were pulled out of Korea. After this, between of Korea and the Qing dynasty lasted for hundreds of years of vassal relationships was over, started a new equival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 서론

1. 문제제기

인류 문명의 발전에 있어, 교류는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한 왕래, 쟁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조선과 청나라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조선과 청나라 양국은 지형적으로 황해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두 나라간의 교류는 활발하였다.¹⁾ 1392년 조선 왕조를 세웠을 때부터 1895년 청일전쟁 때까지 500여 년간 조선 왕조는 중국의 명, 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조선을 중요한 보호벽으로 보았고 조공관계로 왕래하고 있었다. ²⁾ 즉 청일전쟁 때까지 조치는 단순한 종속관계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서양 열강의 침략에 의한 문호 개방이 강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는 복잡해져갔다.

역사적으로 명나라 때, 명태조(明太祖)는 대해(大海)에서의 자유로운 해상활동이 농본주의의 왕조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거듭 해금령(海禁令)³⁾을 내렸는데, 이는 물론 국가 방비의 목적을 가

1) 楊國楨, 周志明 「中國古代的海界與海洋歷史權利」, (2010) "在黃海, 北宋就有與高麗海界的記載. 徐兢在<宣和奉使高麗圖經>中詳細地記述出使高麗的航程. 云: 宣和四年(1122)六月初二日, '西南風作, 未後微霧, 正東望山如屏, 及夾界山(今小黑山島)也, 高麗以此爲界限'."

2) 王蕾, 「圍繞《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有關問題的再討論」, 『韓國學叢書』第九輯. "中國歷來視朝鮮爲重要的藩屏, 兩國關係之密切、交往之頻繁、封貢禮制結構之完備、運行之順暢, 是中國通其他國家的宗藩關係所不能比擬的。"

3) 해금은 "下海通番之禁"의 약칭으로, 명청시대 국가에서 실시한 해양통제책의 총칭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상교통·해상무역·어업 등 일체의 해상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연해의 치안을 확보하고 밀무역을 단속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제를 측면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왕래 관계도 단절하게 하였다. 청나라 때의 강화된 해금 때문에 서양 열강들은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양 열강의 침략에 따라 두 나라는 여러 차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청 양국 간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재편하게 되었고, 또한 해양관계도 역시 변해갔다. 과거의 두 나라만의 관계를 벗어나 다중적인 관계로 성장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나라의 제1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 불평등 조약시대가 시작되었다.⁴⁾ 조약으로의 침략도 이 때부터 시작하였다. 청나라는 이런 조약들을 맺은 후 이웃 나라, 특히 조선 간의 관계에서 지위의 변화가 생겼다.

조선의 경우도 비슷하며, 일본의 침략으로 발생한 강화도사건을 통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되면서, 서양 열강들과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처음에 조선은 무력을 동반한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에도 쇄국을 고수해왔지만, 이후 내부로부터의 자극과 국내 정책의 변화에 의해 개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두 나라는 강제의 개방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폭넓고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정치는 물론, 외교군사, 사회경제, 사상문화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었다.

본문에서는 근대 이후 조청 간 및 양국이 서양과 맺은 일련의 조약을 분석하여 조선과 청이 어떻게 각종 주권을 상실했는가를, 조청 양국 해양 관계의 발전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이해하면서 양국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조청 양국이 맺은 일련의 조약 가운데 해양관련 조항을 통해 양국 간의 해양 관계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전통적인 조청 관계가 타파된 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양국 관계가 나타났는지, 이러한 변화 아래 양국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4) 李育民, 『近代中國的條約制度』, 湖南人民出版社, 2010, p.1.

2. 기존 연구의 검토

1992년 한중 양국 수교가 재개되어 80여 년간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수교가 재개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한중관계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 학계의 경우, 양조전(楊昭全)의 「建國60年來我國的朝鮮·韓國史和中朝、中韓關係史研究綜述」⁵⁾과 권혁수(權赫秀)의 「最近三十年来國內學界的中韓關係史研究綜述」⁶⁾ 이 두 편의 논문에 한중관계 연구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신중국(新中國)이 성립된 후에 한국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잘 나타내는 논문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물론 개방 이전에도 연구되어왔는데, 근대 한국과 중국의 해양 무역 상황을 탐구한 허병현(何炳賢)의 『中國的國際貿易』⁷⁾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존무(張存武)의 『淸韓宗藩貿易(1637-1894)』 등이 있다.

최근에 들어, 중국에서 발행된 책은 상해인민출판사에서 2011년에 출판된 사준미(謝俊美)의 『東亞世界與近代中國』 과, 세계지식출판사에서 2008년 9월에 출판된 권혁수(權赫秀)의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 등이 있다. 연구서인 『東亞世界與近代中國』은 서양 자본주의 세력의 동아시아 침투 및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 그리고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침략을 통해 특히 중국에 심한 타격을 준 것과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이 반침략 투쟁을 통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노력 등을 자세

5) 楊昭全 「建國60年來我國的朝鮮·韓國史和中朝、中韓關係史研究綜述」, 『조선·한국 역사 연구(제12집)--중국 조선사 연구회 회간』, 2012.

6) 權赫秀 「最近三十年来國內學界的中韓關係史研究綜述」,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 주향--중국 근대사 연구 30년(1979-2009)」, 2009.

7) 何炳賢 『中國的國際貿易』, 『民國丛书』 2집, 제38종 경제 종류, 상하이 서점 상무인서관의 의거하여 1927년 영인.

하게 논술했다. 자료집인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은 약장편(約章篇)과 문독편(文牘篇)으로 나뉘져 있으며, 약장편은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 조청 양국 간 주요한 조약, 장정, 그리고 협정, 합의서 등 총 27건을 수록했다. 이런 사료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기의 조청 관계의 기본 뼈대를 반영한 주요 국제법과 제도에 대한 문헌이다. 문독편은 근대 조청 양국 관계에 관련된 상주문, 자문, 서한문, 각서, 공문과 회담기록 등 각종 공사 문헌 총 140건이 포함되어 있다. 근대 조청 관계사에 중대한 사건 및 그에 따르는 기본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도 적지 않다. 양조전(楊昭全)의 「近代中朝貿易(1840~1918年)」⁸⁾, 장암(張岩)·황정천(黃定天)의 「近代中、日、朝“被迫開國條約”之比較」⁹⁾, 송혜연(宋慧娟)의 「清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¹⁰⁾, 모입곤(毛立坤)·장금평(張金萍)의 「甲午前夕朝鮮海上對外貿易初探(1884-1893)」¹¹⁾, 장위명(張衛明)의 「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晚清中朝秩序的重新建構」¹²⁾, 고병희(高秉希)의 「晚清中朝定期航線的開設背景及其影響」¹³⁾ 등이 다양한 측면으로 조청 관계의 변화를 논술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近代中、日、朝“被迫開國條約”之比較」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동북아시아의 조선, 청나라, 일본 삼국은 서양 열강의 강요에 의해 개항하고 서양 열강의 침략자와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조선, 청조, 일본 삼국은 개항 조약을 맺은 후에, 각자의 내부적인 상황에 맞추어 발전되었고 위기 앞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8) 楊昭全, 「近代中朝貿易」, 『社會科學戰線』, 1989, 第4期.

9) 張岩, 黃定天, 「近代中、日、朝“被迫開國條約”之比較」, 『社會科學戰線』, 2010, 第9期.

10) 宋慧娟, 「清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 吉林大學2005年博士卒業論文

11) 毛立坤, 張金萍, 「甲午前夕朝鮮海上對外貿易初探」, 『安徽史學』, 2008, 第4期.

12) 張衛明, 「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晚清中朝秩序的重新建構」, 『學術研究』, 2011, 第3期.

13) 高秉希, 「晚清中朝定期航線的開設背景及其影響」, 『史學月刊』, 2006, 第1期.

있다.

다음으로 「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晚清中朝秩序的重新建構」에서는 조선의 속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번(宗藩) 체제를 명시하여 국제법에 맞게 수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했다고 본다. 종번 체제와 국제법의 복잡한 관계는 청나라 말기 서양의 충격에 대해 대응하고 근대외교로 전환하는 내재 동력이 되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甲午前夕朝鮮海上對外貿易初探(1884-1893)」에서는, 갑오전쟁 전 조선 대외 무역에는 중대한 전환이 발생했는데, 수출입 상품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상 대일 무역은 육지 변경 물류를 대체하고 새로운 주류가 되었다. 무역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인천, 부산, 원산 등의 무역 상황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청일 양국 상인에게도 많은 장점과 단점도 있었다고 보았다.

그 밖에 조청 양국간의 조약 및 양국이 서양과 맺은 조약에 관련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곽위동(郭衛東)의 『轉折:以早期中英關係和「南京條約」為考察中心』¹⁴⁾, 후걸(侯傑)의 『紫禁城下之盟:天津條約、北京條約』¹⁵⁾, 권혁수(權赫秀)의 「江華條約與清政府關係問題新論」¹⁶⁾, 왕여회(王如繪)의 「再論「江華條約」與清政府」¹⁷⁾, 부옥왕(付玉旺)의 「中日1871年立約述評」¹⁸⁾, 송혜연(宋慧娟)의 「論清政府與「朝美修好通商條約」的締結」¹⁹⁾, 장경매(張京梅)의 「朝美通商條約的簽訂及其對中朝日關係的影響」²⁰⁾, 전예동(田豫東)의

14) 郭衛東, 『轉折:以早期中英關係和<南京條約>為考察中心』, 河北人民出版社, 2003.

15) 侯傑, 『紫禁城下之盟:天津條約, 南京條約』,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16) 權赫秀, 「江華條約與清政府關係問題新論」, 『史學集刊』, 2007, 第4期.

17) 王如繪, 「再論<江華條約>與清政府」, 『東岳論叢』, 2011, 第6期.

18) 付玉旺, 「中日1871年立約述評」, 『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2, 第2期.

19) 宋慧娟, 「論清政府與<朝美修好通商條約>的締結」,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7, 第7期.

「美朝修好通商條約與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的簽訂及其異同比較」²¹⁾, 가소협(賈小葉)의 「督撫與「馬關條約」簽訂後的換約問題」²²⁾, 소용령(邵永靈)의 「甲午戰爭與馬關條約」²³⁾, 황점(黃湛)의 「略論中韓通商條約簽訂前後清與朝鮮的關係」²⁴⁾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조청 양국은 맺은 조약을 분석하면서 양국의 관계 면화를 살펴보았다.

위의 중국 연구 외에도 한국과 일본 학자의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나애자의 『한국 근대 항운사 연구』(1998년)²⁵⁾, 김종원의 『근대 동아시아의 해양관계사 연구』(1999년)²⁶⁾ 등의 대표연구가 있다. 나애자는 「조청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조청 사이 정기적인 항선이 생긴 배경과 과정을 소개했다. 김종원의 책에서도 이 장정이 체결된 배경을 설명하며, 조선의 입장에서 이 장정의 숨어있는 의미를 분석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관련연구들이 출판되어 있다.

이하라 다쿠슈(伊原澤周)의 『近代朝鮮の開港：以中美日三國關係爲中心』²⁷⁾에서는 조선이 개항하는 관점을 풍부하고 상세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항이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20) 張京梅, 「朝美通商條約的簽訂及其對中朝日關係的影響」,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2, 第2期.

21) 田豫東, 「朝美修好通商條約的簽訂與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的簽訂及其異同比較」, 『韓國學論文集』, 2005.

22) 賈小葉, 「督撫與〈馬關條約〉簽訂後的換約問題」, 『中國社會科學院近代研究所青年學術論壇』, 2005.

23) 邵永靈, 「甲午戰爭與馬關條約」, 『紅旗文稿』, 2007, 第18期.

24) 黃湛, 「略論中韓通商條約簽訂前後清與朝鮮的關係」, 「中國邊疆史的研究」, 1997, 第2期.

25) 나애자, 『한국근대항운사연구』, 서울국학자료원, 1998.

26) 김종원, 『근대 동아시아의 해양관계사 연구』, 해안출판사, 1999.

27) 伊原澤周, 『近代朝鮮の開港：以中美日三國關係爲中心』,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8.

수 있다.

마츠우라 아키라(松浦章)의 『近代東亞海域交流史-關西大学東亞海域交流史研究』²⁸⁾는 중국, 일본, 타이완, 한국, 류큐(오키나와) 등 동아시아 해역 내의 각국의 무역, 군사, 문화, 경제 교류 등 각 방면에서의 성과를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司)의 『屬國與自主之間：近代中朝關係與東亞的命運』²⁹⁾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갑오전쟁까지 조청 종번관계를 주축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핵심 문제인 조선의 종속 관련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냈으며 이 문제를 각국 간의 이해관계와 연관시켜 근대 동아시아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도 여러 측면에서 한중일 관계를 논술하였는데 특히 종번 체제를 연구한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의 『中國、東亞與全球經濟-區域和歷史的視角』³⁰⁾에서는 19세기, 청나라가 조선의 일본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을 대신해서 조선의 최대무역국이 되었다고 보았다. 청조가 조선에 있는 큰 대상(大商)을 통하여 적지 않은 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은 분노하였고, 청나라 상인은 조선과 몰래 접촉하면서 일본 상인을 경쟁에서 밀어내었다고 하였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28) 松浦章, 『近代東亞海域交流史-關西大学東亞海域交流史研究』, 博揚文化出版社, 2011.

29) 岡本隆司, 『屬國與自主之間：近代中朝關係與東亞的命運』, 生活・讀書・新知三联书店, 2012.

30) 濱下武志, 『中國、東亞與全球經濟-區域和歷史的視角』,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3. 연구자료 및 연구방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조약 조항을 통해 양국 해양 관계의 발전, 해양 이익의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조약 조항을 분석해 조청간 해양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기본자료로는 『중외약장회요(中外約章匯要)』³¹⁾와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³²⁾등과 같이 조선과 청이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을 편집한 자료집이 있다.

『중외약장회요』는 중국 측 조약집으로 1689~1949년 간 중국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중국과 다른 나라 관계 변화의 발전을 드러낸 약장 120여 개를 모은 것이다. 매 약장마다 주석이 붙어 있고 약장의 내용과 약장을 맺은 역사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는 한국 측 조약집으로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이 처음으로 세계를 상대로 문호를 개방한 「조일수호조규」를 비롯해서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리고 기타 열강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개항 이후 청일전쟁 시기까지 조선의 개혁 과정과 관련해 청일 양국이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체결한 일련의 조약들이 담겨 있다. 이런 조약 내용과 분석을 보면 조선의 변화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문은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각 조약에 나타난 몇 가지 해양 문제

31) 褚德新, 梁德, 『中外約章匯要』,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32) 최덕수, 김소영, 성숙경, 한승훈, 김지형,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2011.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서양 국가 및 일본과 맺은 각 조약 중 해양과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양국 쇄국정책에 따른 해양 관계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 그리고 아편전쟁이 끝난 후 맺은 「난징조약」은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고 근대 중국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³³⁾ 그 후 약 20년 동안 청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와 「톈진조약(天津條約)」과 「베이징조약(北京條約)」 등을 맺었다³⁴⁾. 이로 인해 청나라 문호는 완전히 개방되었다. 다른 한 편에 조선은 은사지국(隱士之國)³⁵⁾이라 불렸는데, 1876년 일본이 운요호사건³⁶⁾을 핑계로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이 어쩔 수 없이 개항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자유무역, 관세면제,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 조사할 권리 등을 얻었다.

둘째, 종번(宗藩)관계였던 조청 양국이 맺은 조약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등이 있다.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상민장정」 체결을 통해 조선과 근대적 조약형식을 빌어 종번 관계를 재확립하려고 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가 청나라 동북지역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이 조약을 통해 조청 간 해양 관계의 기본을 만들어졌다. 조약을 맺은 후에 조청은 정기 해상 항로를 열었고 해상 무역은 전례없이 활발해졌다.

33) 褚德新, 梁德, 앞의 책, p.74.

34) 褚德新, 梁德, 앞의 책, p.143. pp.164-165.

35) 은사지국이란 조선은 쇄국정책으로 외부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또 은둔의 나라라고 불렸다.

36) 일본 군함 운요호가 포함외교(砲艦外交)의 일환으로, 1875년 9월 20일 조선 해안을 탐측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하여, 해안 경비를 서던 조선 수군의 방어적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함포공격을 가하고, 영종진에 상륙하여 조선수군을 공격하고 인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퇴각한 사건이다.

셋째, 청일전쟁 후, 1898년 한청 양국이 다시 맺은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정식외교 관계를 맺고 한청 해양 관계는 대등한 단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1905년 11월 7일, 일본은 한국을 강요하여 「한일보호조약(韓日保護條約)」(「을사조약」乙巳條約)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그리고 청나라의 외교관이 철수한 뒤에 「한청통상조약」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본론에서는 먼저 조청 양국의 몰락 및 권익의 상실에 대해 소개하고, 이로 인해 맺은 각 해양과 관련된 조약 조항을 정리하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조청의 첫 개항

(1) 청의 해금 정책과 개해

예로부터 중국 변방의 변란이나 재해는 지형적 특성상 몽골과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북쪽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역대 통치자들은 육지 방어만 중시하고 해양 방어를 뒷전에 두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명나라 후반부터 서양 열강이 속속히 바다를 통해 들어오고 청나라 때 동남 연해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청나라가 해양 방어에 대해서 아예 대비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 정부는 외부교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해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뒤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청나라의 주요 외교 도시였던 마카오(澳門)와 광저우(廣州)를 해양 방어 기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양 방어에 대한 기본 정책은 청나라의 몰락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바로 해금이란 정책이다. 해금은 서양의 외부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국과 물건의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폐쇄적인 대외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청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했다. 엄격한 해금과 쇠국(鎖國) 정책은 명말청초 시기의 중국 해외 무역과 관련된 해양 기술이 급속히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게 만들었다.

명말청초 학자 고염무(顧炎武)는 ‘해면(海面)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없어서 가난한 인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가고 해적이 되어 망명한다.’, ‘해금이 심각하면, 식량을 거두지 못하고 빼앗기 시작한다.’라

고 말했다³⁷⁾. 이러한 기록은 해금 정책이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 당시 정부는 <방이오사(防夷五事)>를 반포했다.³⁸⁾ 방이오사 중에는 서양 상인을 심히 경계하는, 각박한 규정이 있다. “서양 상인들은 광주에서 상업할 수 있지만 광주 이외의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관광하지 못하며, 가족들과 같이 광주에 거주할 수 없다; 중국 상인은 서양 상인한테 차관(借款)을 할 수 없다; 상선은 황포(黃浦)에서 정박하지 못한다.”라는 문구이다. 이러한 문구는 청나라의 해금정책과 쇄국정책을 잘 나타내 준다.

그래도 청나라와 밀접한 무역 왕래가 있는 서양 국가들은 해금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사절단까지 보냈지만 푸대접을 받았다. ³⁹⁾1793년에 영국은 중국에 거대한 사절단을 보냈지만 건륭 황제(乾隆帝)가 영국 국왕에게 청나라 산물은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으므로 대외 무역을 늘일 필요가 없다는 답서를 보냈다. 바로 이런 청나라의 자만심과 쇄국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서양 열강들의 중국에 무력간섭하려는 야망이 강화되었고, 아편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1840년 아편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를 통해 침입을 받았다. 중국이 강제적으로 아편을 불사른 정책은 아편전쟁을 발발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의 해금정책과 쇄국정책도 전쟁의 원인으로서는 큰 작용을 하였다. 그렇게 2년의 전쟁 이후 영국이 청나라에게 승리하면서 「난징조약」이 체결되었고 중국의 강제적인 문호 개방이 시작하

37) 顾炎武,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册, 1933.

38) 防夷五事: 防范外夷規條, 是中國清代乾隆二十四年(1759年)時, 清廷爲了加強對外貿易的管理而制定的法律, 共有五項, 故又稱防夷五事.

39) 王秀英, 「近代中國海權意識的覺醒」, 『遼寧青年管理幹部學院學報』, 1999, 第3期. "18世紀中葉, 以英國爲首的西方國家不甘心接受廣州貿易的種種限制, 企圖北上浙江變更貿易港口. 清政府斷然明令'此地非洋船聚集之所.'"

였다.

우선 「난징조약」은 중국 근대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이고 많은 불평등 조약은 이 조약에 의해서 각 특권을 얻게 되었다. 이 조약은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조약 제도의 초석이 되었고,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난징조약」의 목적은 청 정부가 중외 왕래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등 열강은 중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 그런 조약을 통해 영국과 똑같은 조약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조약 특권이 많이 확대되었다. 그 후에 영국도 이미 얻은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계기를 찾아 새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했다. 심지어 애로호(Arrow)사건⁴⁰⁾ 및 서림교안(西林教案) 사건⁴¹⁾을 핑계로 1856년부터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으며, 1858년 천진(天津)에서 「텐진조약(天津条约)」을 맺었다.

「난징조약」을 대표로 한 제1차 불평등조약으로 열강들은 중국에서 특권 제도 체제의 기초를 다졌다.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 때 맺은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평등조약의 내용을 더 보충하였다.⁴²⁾ 일련의 자유무역체제, 항구개방 및 개항장제도, 조계제도 및 구체적인 협정관세, 영사재판제도 등과 관련된 제도와 합쳐진 조약제도가 만

40) 애로호사건, 1856년 영국 국기를 게양한 상선(商船)Arrow호는 중국인이 소유하여 운영한 상선이었으나, 청조의 관헌이 들이닥쳐 중국인 해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국 측은 영국 국기가 끌어내려진 일로 국기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일부로 일으킨 사건이다.

41) 서림교안, 또 마신부 사건(馬神甫事件)이라고 한다. 1853년 프랑스 천주교 신부 샹달레르는 불법적으로 중국 광서 서림현(廣西西林縣)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명예으로 중국을 침략 활동한다. 1856년에 요산(堯山)에 체포되었고 벌을 받고 죽은 후에 마카오에 있던 대리고사, 드 쿠르시는 항의를 제기했고 이를 핑계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다.

42) 李育民, 李传斌, 刘利民, 『近代中外條約研究綜述』, 湖南人民出版社, 2011, p.175.

들어짐으로써, 청나라의 권세는 크게 바뀌게 되었고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다.

(2) 조선의 쇄국정책과 조선말의 변화

조선의 대외기본은 사대교린(事大交隣)정책이다.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 일본에 대한 교린외교가 전부이다. 따라서 중 일 이외의 어떤 유럽 나라와 교섭하지 않는다는 해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8, 19세기 한반도 근해에는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함에 따라 조선정부는 양이와의 교섭은 범금 또는 국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서양 세력들에게 침탈을 당하면서 미개척지인 조선 역시도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19세기 후반 조선의 최고 실력자는 척화사상, 쇄국정책 등으로 유명한 흥선 대원군이였다. 사실 처음에는 대원군도 서양 세력을 마냥 거부하지만은 않았다.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청을 아편전쟁에서 굴복시킨 모습을 보았고 북변에서 강해지는 제정 러시아 세력의 압박으로 인해 도움이 될 만한 상대가 필요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찍부터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았다.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한중관계의 핵심은 곧 조공책봉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이 모두 인정했던 책봉관계의 “명분”이며, 양국은 이를 위해 조공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과 비슷한 조약을 중국과 맺고 이익을 얻으려 시도했다. 그 결과 「중일수호조약」을 체결했고 양국 근대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면 중국과 연합하여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일본은 청나라의 태도를 떠보면서 조선 침략을 재빨리 진행하였다. 1874년 일본은 대만(臺

灣)을 침략하여 청나라로부터, 배상금 50만 백은(白銀)을 받았고, 다시 조선 침략을 시작하였다.

1875년, 일본은 대등관계를 맺자는 요구를 하지만 조선 정부는 거절했다. 이 시기는 대원군은 민씨와의 내부 분쟁을 계기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일본정부에 “군함 한두 척을 대마도와 조선의 사이에 해로를 측량하는 척하면서 시위를 하며, 군대의 압력으로 조선 문호를 열자”는 건의를 했다. 43)9월에 일본 운요호는 조선의 한강의 근처에 들어가서 조선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조선 군대는 포탄으로 경고했는데, 운요호는 반격하고 영종도(永宗島)가 함락되었다. 즉, 일본은 조선에서 “운요호사건”을 일으켰다. 44)이 핑계로 1876년 1월 8일에 일본은 쿠로다 카요다카(黒田清隆),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을 파견하여 군함 8척을 거느리고 조선에 가서 교섭을 시도하였고, 청나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를 베이징으로 파견하여 청조의 태도를 타진했다. 청조 총리아문은 “조선은 청나라의 종속국이지만 내치(內治)와 외교는 자주적이며 청나라가 참견하지 않는다.”라고 표명하였다.45) 이로부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었다. 1876년 1월 30일에 조선은 신현(申樞)을 접견 대신으로,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일본대표와 협상했다.46) 협상 기간에 일본 군대는 함부로 총을 쏘며 위엄을 과시하였고, 1876년 2월 26일에, 조선과 일본은 강화부(江華府)에서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조약」을 맺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

43) 菊池謙让, 『近代朝鮮史』上卷, 東京共同出版社, 1940, pp.319-320.

44) 李濤, 「从〈江華島條約〉簽訂窺探中、朝、日三國關係變化」, 『延邊教育學院學報』, 2010, 第3期.

45) 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台北中央研究院, 1972, p.273.

46) 최덕수 앞의 책, pp.29-30.

화도조약을 통해, 일본이 조선 항구에서의 자유무역, 관세면제, 일본 화폐 사용권, 거주권, 조선 해안 자유 감측권(堪測權), 영사재판권 등 특권을 얻음으로써 조선의 해양 권익은 거의 다 상실해 버렸다. 하지만 강화도조약을 맺은 후 조선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그 밖의 나라에는 여전히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2년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조선은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경제교류가 확대되어갔다. 하지만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4조를 전문으로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미국 간의 영구적인 평화와 우호관계의 유지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호 외교대표의 주차(駐筭)와 개항장에 영사과건, 영사재판권, 관세 협의권, 최혜국대우 등 불평등한 조항이 있는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조약이었다.⁴⁷⁾ 이러한 조약을 시작으로 훗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1945년 광복이전까지 일본 통치아래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19세기 중반부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전환과 더불어 전개된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따라 중국과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결국 구미열강의 견고한 군함과 정예한 대포에 의해 속속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840~1842년의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청정부가 낡은 대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854년 미국의 “黑船”에 의해 막부 일본이 부득이 개항을 선택하였으며, 이른바 “은둔(隱遁)의 나라”로 불리던 조선왕조마저 신흥 일본의 무력위협으로 체결된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드디어 나라의 문호를 열게 되었다.

47) 田豫東, 「<美朝修好通商條約>與<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訂立及其異同比較」, 『韓國學論文集』, 2005.

2. 조약을 통해 본 조선과 청의 권익 상실

19세기 들어와 동북아시아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의 변화에 흔들리게 된다. 중국은 난징조약,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 한국은 강화도 조약 등을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불평등 조약으로 서세동점의 시대가 되어갔다.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각 나라는 조약을 바탕으로 국운이 변화하게 되었다. 우선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다.

위의 각 조약에 대해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조약 명칭	시간	국가	주요 내용	영향 및 의의
난징 조약	1842년 8월	중 - 영	①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②광저우(廣州)·샤먼(廈門)·푸저우(福州)·닝보(寧波)·상하이(上海) 등 5항(港)을 개항한다. ③개항장에 영사(領事)를 설치한다. ④전쟁배상금으로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⑤행상(行商) 주, 공행(公行)과 같은 독점상인을 폐지한다. ⑥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한한다.	영사의 재판권 인정과 수출입품의 세율 협정 및 개항장에 있어서의 조계(租界)설치·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조관(條款) 등의 특권을 획득하였다
텐진 조약	1858년 6월	중 - 영, 러, 미, 프	①외교 사절의 베이징 상주 ②뉴장(牛庄), 등주(登州), 타이완(台灣), 그 후 타이남(台南)으로 정한다), 담수(淡水), 처오저우(潮州), 그 후 산터우(汕頭)로 불렸다), 충저우(瓊州), 한커우(漢口), 주강(九江), 난징(南京), 진강(鎮江), 등 도시는 통상항구로 개설 ③그리스도교의 전교사가 내지(內地)에 와서 자유롭게 전교하는 것을 허락	연해 통상, 내지 전관(傳款), 영사재판권 및 최혜국대우 등 일련 특권을 얻었다.

			<p>④내지 여행과 양쯔강(揚子江) 통상의 승인</p> <p>⑤외국 상선(商船)의 양쯔강 각 항구에서의 왕래를 허락</p> <p>⑥새로운 무역 규칙과 관세율 협정</p> <p>⑦영국에 400만, 프랑스에 200만 배상금을 주다</p>	
베이징 조약	1860년 10월	중영, 프.	<p>①텐진을 개항장으로 개설</p> <p>②영.프는 화공(華工)의 모집을 허락</p> <p>③주룽(九龍)을 영국에 할양</p> <p>④전에 몰수한 천주교(天主教)의 재산을 돌려준다. 프랑스는 독단으로 조약에서 “프랑스 전교사(傳敎士)는 청나라 각 성에 전지(田地)를 살 수 있고 편할 대로 건축한다”는 조항을 붙였다.</p> <p>⑤영국, 프랑스에 이른바 군비(軍費) 각 800만을 배상하며, 위로금(慰勞金)으로 영국에 50만, 프랑스에 20만을 준다.</p>	<p>텐진을 개항장으로 해서 청조 수도경비(京師衛戍)의 문호를 열며, 게다가 각국의 공사(公使)가 베이징에서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열강들은 더 편리하게 청조를 통제하고 청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할 수 있다.</p>
강화도 조약	1876년 2월	조 - 일	<p>①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p> <p>②치외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p> <p>③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p> <p>④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p>	<p>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p>
조미수호통상 조약	1882년 5월	조 - 미	<p>①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p> <p>②양 체결국은 각각 외교대표를 상</p>	<p>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직접적인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고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p>

		호 교환하여 양국의 수도에 주재시킨다. ③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 ④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은 조선정부에 속한다. ⑤거류지는 조선영토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었다. 그리고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제국과의 조약도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해 이뤄졌다.
--	--	---	---

위 표에 따르면 각 조약은 공통점이 있다. 즉 서양 열강이 조약을 통해 강제 교역을 진행함으로써 동북아시장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영토의 할양, 항구의 개항, 개항장의 설치, 영사의 설치,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인정, 협정 관세의 체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난징조약>은 조계의 설치를 통해서 영국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위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그 다음은 열강들은 <텐진조약>을 통해서 영사재판권의 획득하여 앞으로 무역과 군사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베이징조약>은 청국을 더 잘 통제하고 청국 국민들을 더 노예화할 수 있게 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치외법권의 인정하고 연안 측량의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은 더 전면적으로 문호개방이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에서는 몇 가지 부분을 나누어 조약에 반영 있는 불평등 관계를 분석하고자한다.

(1) 영사재판권

처음에, 청 정부 관원들은 국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했고 도주범 문제를 해결, 채무 분쟁(債務紛爭)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영국이 중국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마치 포기할 참에 청 정부 관원이 주동적으로 내줬다.’⁴⁸⁾ 「난징조약」에서 영국 정부는 영사재판권을 얻기 위해 “영국

군주는 영사, 관사를 파견하고 설치하며, 5개 성읍(광주, 사면, 푸주, 닝보, 상해)에서 상인의 각 사항을 관리하고 각 지방 관원과 문서로 왕래하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⁴⁹⁾ 제2차 아편전쟁 후, 중국은 다시 서양 열강과 일련의 영사재판권과 관련된 조약을 맺었다. 이런 조약을 통해, 열강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중국에서 영사재판권과 최혜국대우 등을 얻도록 확정했다. 또한, ‘일체균점(一體均霑)’⁵⁰⁾ 조항을 통해 더 많은 특권과 이익을 얻었다.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조약」에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재류하면서 만약 죄를 범해 조선국 인민과 교섭해야 하는 것은 모두 일본 관원에게 귀속시켜 심의하고 처단한다.”고 되어 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이번에 통상화호를 맺은 다음 두 나라는 전권대신을 파견해 피차 체약국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피차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치해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에 거주하는 미국 인민이 본분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면 그 생명과 재산은 조선의 지방관이 마땅히 대신 보호해 주고 조금이라도 속이고 모욕하거나 손해를 주고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장차 미국의 집과 재산을 겁탈하고 불태우거나 훼손시키려 하면 지방관은 영사에게 통지하여 즉시 마땅히 군사를 파견해 탄압하는 동시에 범죄자를 조사해 체포하고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리한다.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를 막론하고 모욕하고 소란을 일으켜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

48) 郭衛東, 「近代中國利權喪失的另一種因由——領事裁判權在華確立過程研究」, 『近代史研究』, 1997, 第2期.

49) 王鐵崖, 『中外舊約章匯編』, 三聯書店, 1957, p.31.

50) 일체균점은 미국은 제일 먼저 「망하조약」에서 미국의 ‘최혜국 대우’에 대해 제안한 것이었고, 즉 다른 나라 지금이나 미래에 얻는 모든 이익을 미국도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특권이다. 그 후에 프랑스는 「항포조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등을 손상시키면 마땅히 미국 영사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귀속시켜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해 징계 처리한다.”고 명시하였다.

영사재판권제도는 이런 조약제도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 권익은 서양 열강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침범하여 피해를 끼치면서 다른 각 조약 특권을 행사할 때 보장이 되었다. 영사재판권을 상실해서 나라의 체포 권한이 박탈되거나 체포 권한을 유지하더라도 상대방 영사가 주재하는 곳에 보내고 심문해야 된다.⁵¹⁾ 이 특권제도는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파괴했고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다. 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영사재판권의 출현, 확대 및 실시는 인민들 법률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법률제도에 대해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사재판권은 현대화 법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가 있다.

(2) 협정관세

과세는 나라의 중요한 권익이고 재세 수입에 영향을 끼치며, 더 중요한 것은 나라 경제주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각 조약 중에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난징조약」에 “병공의정(秉公議定)”이라는 조항이 있다.⁵²⁾ 표면적으로 보면 청 정부는 공평한 관세 법칙을 지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청국은 협정국경관세 원칙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지의 협정관세에 대한 유리한 주도권을 얻었다.⁵³⁾ 「망하조약(望夏條約)」에는 ‘세칙을

51) 陳曉東, 「试评〈剑桥中國晚清史〉的南京條約觀」, 『開放時代』, 1987, 第6期.

52) 병공의정, 「난징조약」 제10조에 “应纳进口, 出口貨稅, 餉費, 均宜并共議定則例”라는 내용이 있다. 병공의정은 영어 원문이 “a fair and regular Tariff of Export and Import Customs and other Dues”이다. “병공”과 “공평적과 정규적(a fair and regular)”이고 청 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세울 때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는 뜻이다.

53) 郭衛東, 『轉折: 以早期中英關係和〈南京條約〉爲考察中心』, 河北出版社, 2003,

바꾸려면 미국 측과 의논하고 허가받은 후에 바꾸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로부터, 중국은 관세 자주권을 상실했다.⁵⁴⁾ 「텐진조약」에는 ‘난징조약 제10조에 수입, 수출 화물의 세금을 이미 내정하였으며, 100량에 세금 5량으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수입 관세를 5%로 제한한 것으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입세이었다. 세칙을 제정하였지만 서양 열강들은 다른 조약 특권을 이용하여 계속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 협정관세로 인해 나타난 위해는 해관세율을 계속 낮추었고 중국 해관은 중국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⁵⁵⁾

이에 비해, 「강화도조약」의 속약인 통상장정 제7조에는 “돛대가 여럿인 상선 및 증기 상선의 세금은 5원이다(부속된 배는 제외한다). 돛대가 하나인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500척 이상의 화물을 실은 것이다). 돛대가 하나인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이다(500척 이하의 화물을 실은 것이다).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조항은 일본이 조선에서 수입하는 모든 화물의 세금이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선박의 항세뿐만 아니라 상품의 수출입세까지도 면세를 허락받았던 것이다. 이 조약을 맺은 후에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수출입 상품에 대해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세금을 면세하기로 허용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무역 거래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처지였다.⁵⁶⁾ 「강화도조약」의 교훈에 비추어,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을 때 세금부과를 요구했다. “미국 상인과 그 상선이 조선에 가서 무역해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수세의 권리는 마땅히 조선의 자주로

pp.533-546.

54) 李育民, 『近代中國的條約制度』, 湖南師範大學出版社, 1995, pp.125-126.

55) 陳詩啓, 「中國近代海關史總述之一：中國半殖民地海關的創設及其巩固過程(1840-1875)」, 『廈門大學學報』, 1980, 第1期.

56) 林希, 「〈中日修好條規〉的簽訂及其意義」, 『今日科苑』, 2011, 第10期.

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선의 관세자주권은 파괴되었다. 조약은 민생을 위한 일상 용품이 있으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사치품과 기호품인 양주·여송연(呂宋煙)·시계와 같은 종류는 가격에 따라 세금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출항하는 토산물은 가격에 따라 세금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수출입관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지만 이런 낮은 관세는 미국 상품의 덤핑과 원료의 침탈에 편리하게 만들었다.

(3) 개항장

제1차 아편전쟁 후 맺은 각 조약을 보면, 중국 연해 열강 등은 서양 열강들의 무력 침략 아래 개방되었고 통상에 편리하게 되었다. 개항장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외국 상인과 자국 국민은 예외 없이 자국 정부가 관리하였다. 하지만 근대 개항장 항구 등에서 외국 상인은 자유무역, 가족들을 데리고 거주, 차지(借地)건축, 그리고 자국 정부가 관할하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개방된 개항장을 통해서 특수한 통상제도가 형성되었다. 개항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중국 해관 관리권은 청 정부로부터 서양 열강들에게 넘어갔다. 개항장에 영사를 파견하고 주재시키는 것은 중국의 옛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양 열강은 침략과 약탈의 발판으로 삼긴 했지만 중국 전통적인 폐쇄 상태를 깨뜨린 데 도움이 되었고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 문명의 확산을 자극하는 역할도 있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근대화 발전을 추진한 역할도 있었다.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조선도 억지로 개항장이 개방되었다. “일본국 인민이 왕래하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역에 나아가 땅을 빌리거나 집

을 짓고 혹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 임시로 살고자 한다면 각각 그 편의를 따라 들어주도록 한다.” “양국이 이미 우호를 통했으니 피차 인민은 각자 뜻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추호도 간섭할 수 없다.” 강화도조약을 보면, 사신의 체류 일정을 시의(時宜)에 맡기며, 사신의 파견 시기를 수시(隨時)로 규정해 체류 기간과 파견 시기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⁵⁷⁾ 이로 인해 외교사절의 상주와 나아가 상주 외교 공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이 조항을 통해 조선 개항장에서 무역 및 거주권을 얻은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새로운 항구를 여는 요구가 없지만 “미국 상인이 이미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가면 그 해당 지역에서 지정한 경계 내에서 거주해 주택을 임대하고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 것을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길 것을 승인하고 그 무역과 생산은 일체 가지고 있는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금지하지 않은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⁵⁸⁾이 조항은 조선 주재 미국인들이 개항장 내 지정된 장소, 즉 조계지에서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그 중에 “양국이 대신을 피차 도성에 파견하여 주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연해와 내륙 수운의 항운 권리는 국가의 국방, 정치, 그리고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국 인민들만 이 권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은 연해에 항운 및 무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 열강들은 조약을 체결했을 때, 항운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요구했다. 항운 특권은 이른바 외국인이 자국의 연해 및 내국 항로를 통해 항운한다는 조약 특권이다.

각각의 조약 내용을 분석하면, 중국 조약제도 아래, 외국인이 누리는 이

57) 최덕수, 앞의 책, p.45.

58) 최덕수, 앞의 책, p.94.

러한 권익은 완전히 서양 열강들이 중국에서 탈취하는 것이고, 이 협정 관세 특권의 이익 보장 아래, 영사 재판권의 비호가 있어, 서양 열강들의 선박은 중국의 연해를 자유롭게 항해하는데 이르게 되었고, 중국 내륙의 하천과 내항에도 거의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 이런 것을 통해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 침투가 편리해졌다.⁵⁹⁾

조선도 열강의 불평등조약의 강요로 해운주권을 침해받았다. 개항 후 열강의 해운업침투는 곧 대외무역의 종속적 확대와 조선상인의 상권침탈이라는 경제적 침략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본은 조선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의 내용 가운데 해로를 통한 통상의 기본 조건으로서 조선의 연안에서의 자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인정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해운권을 토대로 일본은 조선이 청 및 서양 열강과 근대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개항장 무역을 독점하면서 개항장을 거점으로 하는 기선운항도 독점하였다.⁶⁰⁾ 조선은 열강의 해운업침투에 대항할 수 있는 근대적인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상권보호를 통한 무역진흥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1882년 이전에는 뚜렷한 해운정책이 없었다.⁶¹⁾

3. 조청 관계의 변화

1876년 조일수호조약 이후 열강은 속속들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한중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서세동점과 일본의 북상(北上), 러시아의 남하(南下) 등은 조선에 대한 청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양국의 종속관계에도 변화가 나

59) 郭壽生, 『各國航業政策實況与收回航權問題』, 華通書局, 1930, 第八章.

60) 羅愛子, 「開港後 清·日의 海運業浸透와 朝鮮의 對應」, 『梨花史學研究』, 梨花女子大學校史學研究所, 1988, 第17期.

61) 1860년대 이전까지 해상수송의 주력은 범선(帆船)이었지만, 이후 점차 기선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 해운업의 침투는 더욱 심화되었고, 조선정부의 재정지원 결여와 열강의 해운권 장악으로 더 이상의 지전을 보지 못하였다.

타났다. 62) 특히 1876년 한일수호조약, 1882년 조미수호조약과 임오군란,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청일전쟁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63)

전통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으로서 청나라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나라 안의 정치와 중국 이외의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자주를 유지했다.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수호조규의 체결, 러시아의 남하정책 등으로 인한 종속관계의 약화를 우려하여, 청국은 조청종속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모색했고 그에 따라 조선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종주권의 강화로 나타났고, 조선과 청이 1882년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종속관계의 명시와 조선의 외교활동에 대한 제약 등으로 실천되었다. 64)

명대 중국이 해금정책을 취하자 조선도 고려 이래 왜구에 대처하고 동시에 조공관계에 있던 명·청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해금을 단행하여 해방을 강화하였다. 65) 조선시대에는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도민(島民)이나 유민(流民)을 쇠환(刷還)하는 경우도 잦았다. 66) 1840년 이후에, 해금이 실제적으로 폐지되었고, 청나라의 자존심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청나라 통치자들 중 유식한 사람들은 “사이장기이제이(師以長技以制夷)”라는 전략을 실행하였고, 이어서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외 해양

62) 韓圭茂, 「清·朝鮮間 宗屬關係의 변화와 列強의 태도」, 『근대중국연구』, 중국근현대사학회, 2000, 제1집.

63) 權赫秀,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 中國朝鮮史研究會編, 第一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64) 高宗19年(1882) 2월 17일 李祖淵과 함께 文議官(問議官)에 임명되어 통상·주사(駐使)문제와 연미(聯美)사항을 상판(商判)하고 媾和(媾和)로 향하였다.

65) 조선왕조는 태종대에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 이익을 도모하는자(私自下海興利者)”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래로 해금에 대한 조항과 그 처벌도 이후 완급은 있었지만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66)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010, 제23집.

관계에 대해 원활한 조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런 정치 정책의 변화도 한중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은 자본주의에 편입되었고, 대외 침략을 시작했다. 해양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을 노렸다. 조선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중국이란 장애물을 치워야 조선을 건드릴 수 있었다. 1870년, 일본 외부대신 야나기 사키미츠(柳原前光)는 “원교근공(遠交近攻)”, 즉, 중국과 화친하고 조선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중국에 「중일수호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1871년 9월 13일에, 중일 간에 중일수호조규와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조약은 “중일 양국이 이미 우호를 통했으니 피차 동등한 예의로 상대하여 추호도 침범하여 넘기나 싫어함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연해 개항장에 장소를 지정하여 상민 왕래 무역을 허락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없고 협정 관세와 영사재판권 등도 서로 대등하게 하였다. 이런 조항은 중국과 일본 간 조약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확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을 가라앉힌 후인 1875년 5월, 일본 군함이 조선에 들어가고 1876년에 강화도에서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청일수호조약」, 「강화도조약」이 두 개 조약은 조, 청 양국 건립 이래, 중국과 조선의 종속적인 해양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내부에서도 청나라 아래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사상은 왕족, 대신부터 일반 지식인에게까지 침투되어 있었다. 청나라에서는 동북방무(東北防務) 및 화북해방(華北海防)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일본은 그 시간에 조선의 제어를 가속하여, 끊임없이 조선 정부 기구, 구내에 침투하고 있었다.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에 대한 일본 세력의 확장은 청정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홍장(李鴻章)은 “일본은 아주 가깝고, 영원한 청나

라의 염려”라고 여겼다. 이외에 크림리아 전쟁후 러시아는 동방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국제정세 아래에서 청나라는 조선을 간섭하는 정책을 이끌었다. 청나라는 조선의 통제에 대해 모든 방면의 강화를 준비하고, 조정과 조선의 무역정책을 포함하여 조선을 청나라의 종속국(屬國)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청나라 동북지역 룡싱(龍興)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과 러시아를 경계했다.

1880년대는 조청관계에서 획기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청조가 전통적 책봉조공관계에서 이탈해 조선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섭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1880년대 초반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에서 청의 우위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조청 양국 간 1882년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알 수 있다.⁶⁷⁾ 1882년 조선과 청이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전근대의 해금 체제를 해체하고 해양을 통한 통상과 교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조청관계에 일대 전환점이었다.

(1) 전통적 관계의 균열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개방을 한 후에도 조선은 여전히 대외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만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문호개방 이후 점차 확대되는 일본인의 상행위에 대한 조선 상권보호라는 과제와 여러 나라의 통상 요청에 직면하게 되자, 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외통상정책을, 대내적으로는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하고자 했

67) 장정에 포함된 규정은 상대국 개항장에 각기 상무관을 주둔시킨다는 것과 조선에서 중국이 치외법권을 갖는다는 것, 중국상선의 조선 개항장 출입이나호혜적인 근해어업의 허용한다는 것, 식량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어선의 해안정박을 허용한다는 것 등 중국의 일반적인 특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⁶⁸⁾

조약의 체결에 따라 조선의 대외관계가 근대적 통상관계로 나아가자 중국은 그것을 기회로 조선에서의 중주권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킨 중국은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종속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1882년 9월에 중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⁶⁹⁾

이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서양 열강 각 국가와의 통상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청나라에 통상을 요구하려는 것이었고, 한편, 조선 측의 경비 부담이었던 조공사절·칙사의 왕래 및 청나라와의 국경지역 무역에서도 바꾸어야 할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사신 문제에서 조선은 사신 왕래에 따르는 경비 부담에서 벗어나려 했고, 한편으로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독립국 대 독립국의 평등한 관계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과는 달리 청나라는 조선에서 일본 세력이 독주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선에 통상을 권유하고 있었다.

1882년 7월 조선군인은 장기간 보급품을 보급 받지 못하자 일본인 기술병(別技兵)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일으켰고, 다시 흥선대원군을 추대했다. 세력을 잃은 민비세력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청나라는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했다.

1882년 10월, 청나라 직예총독(直隸總督) 겸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은 주북(周馥)·마건충(馬建忠)과 조선교섭통상사무아문 대표 대표 조영하(趙寧夏)·김홍집(金弘集)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시에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등 문서를

68) 문호개방 이후의 무역을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만을 설정해놓고 식민지적 무역 구조가 이미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69) 최덕수, 앞의 책, 한승훈, 「중국, 속국을 불평등하게 <우대>하기」, pp.109-111.

체결하였다.

이 장정에는 영사재판권으로 상징되는 치외법권 규정이 있었고, 청국상인의 통상특권을 보장해 조선 내의 여행 통상권을 차지했으며, 조선 청국간의 선박왕래 독점권도 명시하였다. 그밖에도 중국 군함이 조선 해안을 왕래하거나 개항장에 정박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장정은 전통적 조공관계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대적 통상관계의 전개를 규정한 내용으로 1892년의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중 두 나라 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 문헌으로서 19세기 말 한중관계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장정으로 조선과 중국이 전면적인 통상관계에 들어갔다. 장정의 전문에 “이번에 체결한 수륙 무역(水陸貿易) 규정은 중국이 속국을 우대하는 것이고, 우호 관계를 가진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을 청의 전통적인 속방임을 명문화했다. 속방관계에 기인해 다른 국가는 「조청장정」의 내용을 균점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서양 열강들은 “일체균점(一體均霑)”할 수 있었고 중주권이 강해지면서 일본과의 경제 경쟁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한국 학자 강만길(姜萬吉)은 “임오군란 후, 청 정부는 더욱 들어가서 조선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며, 맺은 무역장정 등을 통해 경제 침략에 일본보다 더 앞서 있었다.”라고 말했다.⁷⁰⁾

하지만, 이 장정은 불평등성 및 조선 주권과 존엄에 대한 손해가 있는데,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장정을 체결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조선 측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은 “통상·주사를 실행하니까, 장정을 맺을 때

70) 조선학자는 “또 하나 불평등조약을 텐진에서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청일 양국 세력의 심투와 자본주의 열강의 분쟁 침략에 따라 조선의 정치와 경제가 한 걸음 더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생길 문제에 대해 의정하고, 조상국이 정한대로 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그래서 장정은 완전히 강요한 조약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장정의 불평등함은 종속 관계 등 역사적인 것에 있다. 장정을 맺었을 때 조선 문의관인 어윤중(魚允中)은 청나라 측에서 작성한 장정 초안에 관한 수정 요구를 문서로 제출하였고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평등한 무역관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많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회담과정에서 적극적 외교자세와 노력을 볼 수 있다. 줄곧 조, 청 양 측은 이의가 없을 때까지 장정을 체결했다. 이 장정은 일본의 확장에 대해 견제한 역할도 있다.

장정 체결 후, 임오군란 때 조선에 청나라 군사 3000 여 명을 파견하여 남양만(南阳湾)의 마산포(馬山浦), 한성(漢城), 수원(水原) 등에 머물렀기 때문에, 늘 청나라 군함이 왕래 했다. 화상도 이런 군함을 타고 조선에 갔다.

1년 후, 1883년 11월, 조선 통리각국사무아문과 청나라 상하이 선박 투자유치국 총국 사이에 「輪船往來上海朝鮮公道合約章程」을 체결하였고 끝내 정기운항이 실시되었다. 같은 해 12월, 청 정부는 손실 방지와 조선 세관 수입증가를 이유로 조선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요 내용은 상하이-인천 사이의 항로를 확대하고, 상하이-엔타이-나가사키-부산-인천 사이, 그를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중요 항구 역할을 했다. “이 항로는 청나라의 조선 침투 경제의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청나라 상인에 대해 조선 시장에서 상권을 확대하는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이것과 상대적으로, 이 항로는 조선의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⁷¹⁾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해서 일본은 조선정부를 통제하고 청국간의 국교를 단절시켰다. 따라서 부산, 원산, 인천 청국전관조계는 그 설정근거를

71) 高秉希, 「晚清中朝定期航线的开设背景及其影响」, 「史学月刊」, 2006, 第1期. “此航线不但使中国能够奠定在朝鲜渗透经济的基础, 而且对华商在朝鲜市场夸大商权起决定性作用. 与此相对, 此航线在朝鲜商人中产生影响甚微.”

상실하였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 강권으로 청국과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 장정의 폐지를 통지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후 약 5년간 조선과 청국은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다. 조선은 일본의 간섭에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조선 황후 민비가 조선에 있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Weber)에게 연락하여 정변을 일으켜 친일적인 박영호(朴泳孝)정권을 뒤엎었다. 후에, 일본이 민비를 암살하여 다시 친일정권이 세워졌다. 조선 국왕은 일본과 친일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했다.⁷²⁾ 김홍집 친일파는 급히 무너졌고, 친러파 세력이 커져서 조선 친러 정부를 세웠다.

(2) 근대적 관계의 성립

-- 「한청통상조약」

러시아는 일본을 방어한다는 핑계로 1896년 6월 청 정부 특사 이홍장을 협박하여 러시아와 「어적상호원조조약(禦敵互相援助條約)」을 체결했다. 제1조에의하면 “일본이 러시아 연해주 동방지역이나, 청나라나 조선에 들어오면 즉시 이 조약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양국은 조약대로 분명히 하여, 모든 해군, 육군 등을 마땅히 파견하고, 가능한 빨리 출병하여, 서로 지원하고 화약, 식량까지 전력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러시아의 강요 아래, 청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지고 러시아는 마치 조청 양국의 일본 침략 대응책의 지지자처럼 보였다. 양국은 “연러제일(聯俄制日)”을 정치 바탕으로 국교 회복의 첫발을 내

72) 1896년 2월 11일 친러세력과 러시아 공사가 공모하여 비밀리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 옮긴 사건이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며 정동에 위치하였다. 이로 인해 친일정권이 무너지고, 고종이 아관에 머무르는 1년 동안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던었다. 청조는 “남미의 페루, 볼리비아 등 작은 나라에도, 러시아, 호주, 독일은 총영사를 파견하다”는 이유로 1896년 11월 24일에 “총영사 한 명을 한성(오늘의 서울)에 파견하여 주재한다. 임시 외교사신으로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조선은 종속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⁷³⁾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었고 수차례 외교 수립을 간청했다. 여러 번 청조와 외교 수립을 요구하는 동안 러시아가 한국과 청나라를 중재했다. 1898년 3월 청나라에 있는 러시아 임시 공사 파블로프는 총리아문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 주한국 공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부탁하여 청나라에 상호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했다. 이로써 러시아 외교대신 무라비오프(Muravyov)는 “청나라, 한국은 급속히 서로 외교관을 파견하여 귀국의 이익을 더욱 높이라”고 청나라에 말했다.⁷⁴⁾

청조는 1898년 8월 13일 안휘성(安徽省) 안찰사(按察使) 서수봉(徐壽朋)을 한국 주재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파견했다. 양국의 정식 수교는 이미 가까웠다. 하지만 1898년 11월이 돼서야 서수봉이 신임장을 가지고 부임하여 1899년 1월에 육지를 통해 조선에 도착했다. 동시에, 일본도 조청 외교 수립을 지지했다. 한국은 철저히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야 일본이 조선을 통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달리 「한청통상조약」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1899년에 체결된 동등할 정도로 대등한 조약이었고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전통적인 예(禮) 관념에 기반을 둔 계서적 국제질서로 이행하는 것은 1876년에 체결한 조일수호조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일수호조약은 조청의 종속관계를 부인했다. 이로써 조선은 평등한 주권국

73) 中國近代史資料叢刊續編『中日戰爭(4)』中華書局, 1993, pp.236-238.

74) 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八冊 台北中央研究院 1972, p5038.

가를 전제로 하는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질서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때의 조선의 외교는 전통적인 대외관계와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함께 하는 이중적 성격의 외교를 수행하였다.

조선이 처한 과도기적 국제관계는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係約)에서 일본이 청의 종주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종식되었다. 그러나 1876년부터 그 사이의 과도기는 조선이 전통적인 조선-청국관계에서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청국의 간섭을 받던 시기이기도 했다.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에 따라서 조선-청국이 의례적인 종속관계에 있었을 때는 명목상의 종속관계에 만족하고 “내치외교(內治外交)는 자주”라는 입장을 지켰으나, 조선이 다른 국가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과 타국의 수교가 초래하는 불이익을 깨닫게 되면서 1880년대 초부터 실질적인 종주권을 행사하려고 종주권강화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종주권강화 정책의 추진은 1882년 조선과 청국 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명문화되고, 청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청일전쟁 후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청의 종주권이 폐기됨에 따라 비로소 조선과 청국간의 관계는 대등한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 관계를 재정립할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 정립되는 조선-청국 간 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1899년 대한제국과 청국 사이에 체결한 「한청통상조약」이다. 이로써 비로소 동아시아의 중국적 국제질서 속에서 전통 한국의 왕조와 대륙의 왕조 사이에 지속되던 종속관계는 종식되고, 대한제국은 청국과 대등관계를 맺고 과도기적 국제관계에서 탈피해 근대적 국제관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은 청일 전쟁으로 단절된 한중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실질적 수호통상조약이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비교해 전통적인 종번 관계를 최종적으로 종결시키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조약이

라 평한다. 청 사신 서수봉은 한국에 도착한 후 조약 수정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교섭을 무사히 끝마친 다음 실질적인 조약문을 시작한 것이고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조약문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1월 6일부터 조약문의 글자 수정이 끝난 6월 27일까지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한청통상조약」 전문(全文)15조의 조약이 합의(合意)되었다. 75)

4. 체제 전환중의 해양관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자국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청에 통상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시가 국경지역 인민의 경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유민(流民)이 되게 하기 때문이었다. 76) 그리고 조선이 자국의 낙후성을 인식한 것을 계기로 특히 일본세력의 조선의 진출에 크게 자극되어 대청통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일전쟁 발발로 조선은 중국과의 무역장정체제가 무너지고 「한청통상조약」을 체결 때까지 양국 간 다시 새로운 체제로 왕래하기 시작했다. 이런 무역 체제의 변화 과정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의해 북양대신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청나라 상인들을 보호하였다. 이 상무위원이 조선 관리들과 내왕할 때에는 다 같이 평등하게 예의로 대우하게 했다. 만약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리들과 마음대로 결정하기 불편할 때에는 북양대신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북양대신

75) 권석봉, 「韓·淸通商條約의 締結」,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7, 제 54-56집.

76) 王蕾, 围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有關問題的再探討」, 『韓國學丛书』, 2002, 第九辑.

이 조선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알려 주면 조선 국왕이 조선 정부에 공문을 내려 보내어 처리하도록 했다.

조선 국왕도 높은 관리를 파견해 텐진에 주재시키는 동시에 다른 관리들은 이미 개방한 청나라의 항구들에 따로 파견해 상무위원으로 삼았다. 이 조항을 통해, 조청 양국은 상대국에 상주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청나라는 상무위원을 조선에 파견했다. 청나라 상무위원은 명목상 조선에서 청나라의 무역 및 업무를 관장했지만,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의 실무를 맡으면서 조선의 내정에 관여했다. 77)

「한청통상조약」은 1882년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은 후, 조선이 체결한 양식을 답습한 대외 조약이다. 하지만 가장 다른 것은 바로 이 조약은 불평등한 조항을 제거했고, 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이 조약으로, 한청 양국은 대등한 권리를 누리고, 대등한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한청 변종관계가 와해됨을 확실히 보여준다. 78)

「한청통상조약」의 제1조는 이후로부터, 대한민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거주하는 양국의 상민과 교민 모두 보호와 이익상 우대를 받으며, 만일 상대국이 불공정하고 경멸하는 일을 당할 경우 통지하며 서로 도와 중간에서 잘 조처해 우의를 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양국의 우정을 구현한다. 이는 양국 평등 외교의 기초로 다졌다. 79)

1882년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은 전통적인 종변 해양 관계를 새롭게 뛰어넘었고, 양국 간 해양 무역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1899년 「한청

77) 이은자, 「청말주한상무서조직과 그위상」, 『명청사연구』, 2008, 제30집.

78)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이후 무조약상태에서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정부의 꾸준한 수약(修約)요구와 이미 4천여명에 달하는 재한청상민(在韓淸商民)에 대한 보호하느느 현실적 과제에 직면한 청정부의 이해(利害)가 얽혀 그 결과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의 체결은 한·청 관계에 있어서 종래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자주, 평등의 우방(友邦)관계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79) 이재석, 「한청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9집, 2011.

통상조약」은 양국이 다시 평등한 외교 관계와 해상무역 관계를 세우게 했다.

위 두 개의 조약을 양국 간 해양에 대한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하고 비교해 보면: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	한청통상조약
해관 관 세	<p>제4조,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바쳐야 할 화물세와 뱃세를 다 쌍방의 해관(海關) 통해 규정에 따라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바친 출항세(出港稅) 외에 또 입항할 때의 세금명세서를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바치도록 한다.</p> <p>제5조, 두 나라는 다만 시장을 여는 자기 측 지방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도적을 감시해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홍삼을 제외한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다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중전의 객사(客舍)와 식량·마초·접대 그리고 전송 등의 부담은 모두 없애 준다.</p> <p>제6조, 홍삼은 조선 상인이 전래대로 중국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며,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받는다.</p>	<p>제3조는 한국의 상인과 그 상선이 청의 통상 항구에서 무역할 때에는 남부해야할 입출항 화물세와 선세 및 일체의 각종 수수료를 모두 청의 해관장정(海關章程)에 의거해 최혜국 상인에게 징수하는 세금과 같이 한다. 청의 상인과 그 상선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서 무역할 때에는 남부해야할 입출항 화물세와 선세 및 일체의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한국의 해관장정에 의거해 최혜국 상인에게 징수하는 세금과 같이 한다. 두 나라가 이미 개항한 항구는 양국 상인이 가서 무역할 수 있으며, 그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과 맺은 장정과 세칙으로 한다.</p>
항운	<p>제7조, 두 나라의 역참(驛站)도로는 이전부터 책문을 경과했으므로 이 육로로 오가는 데 매우 부담스러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지금 바다에 관한 급령이 해제되었으니 자체의 편의에 따라 뱃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p> <p>오늘 조선에서는 군사용 기계배나 상업용 기계배가 없으므로 조선 국왕은 북양대신에게 제기해 잠정적으로 상업국의 기계배를 달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왕하도록 하며, 조선 정부에서는 배의 마모금으</p>	

	<p>로 약간의 금액을 덧붙이도록 한다.</p> <p>이밖에 청나라의 군함이 조선의 바다 기슭에 와서 순행하는 동시에 각 지방의 항구에 정박해 방어를 도울 때 지방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취소한다. 식량을 사는 것과 운행비용은 모두 군함이 자체로 마련하며, 해당 군함의 조타수 이하 사람들은 조선 지방관과 평등한 예의로 상대하며, 함장은 선원들이 해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엄격히 단속해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p>	
어업	<p>제3조.(…)조선이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 중국의 산둥성(山東省)과 봉천성(奉天省) 등의 연해 지방에서만은 두 나라의 고깃배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동시에 해안에 올라가서 음식물과 음료수를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물건을 장사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몰수한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지방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해 가까운 곳의 상무위원에게 넘겨주어 제2조 준해 처리한다. 상대방의 어선에서 받아야 할 어세(漁稅)는 조약을 시행한 2년 후에 다시 토의해 알맞게 정한다.(조사에 의하면 해변의 물고기들이 기계배에 놀라서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해마다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에 불법적으로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산둥성 어민들이 한해에도 1,000명을 헤아렸다.)</p>	
조난 구조	<p>제3조, 두 나라의 상선들은 상대측의 통상 항구에 들어가서 교역할 수 있다. 신품 부리는(御載) 모든 물건들과 해관(海關)에 세금을 바치는 일체 문제는 모두 두 나라에서 이미 체결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p> <p>만약 상대측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만나거나 얕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아무 곳이나 배를 대고 음식</p>	<p>제10조는 양국 선박이 상대국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이 떨어진 경우에는 항구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하고 식량을 구입하며 선박을 수리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모든 경비는 모두 선주가 부담하되 그 지방의 관</p>

	<p>물을 사며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일체 비용은 선주가 모두 자체로 부담하고 지방관은 적당히 돌보기만 한다. 만일 배가 부서졌을 때에는 지방관은 대책을 강구해 구제해야 하며 배에 탄 여객과 선원들을 가까운 항구의 상대측 상무위원에게 넘겨주어 귀국시킴으로써 종전에 서로 호송하던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 만약 두 나라 상선이 바람을 만나 부서져서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들어가서 부역(賦役)한 자들은 조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몰수한다.(…)</p>	<p>민은 원조하여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해당 선박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 및 왕래가 금지된 곳에서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미수(未滲) 기수(既滲)를 불문하고, 지방관이 선박을 나포하여 화물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원거의 배로 벌금을 물린다. 양국의 선박이 상대국 해안에서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 관청에서 선원을 우선 구호하고 양식을 공급해 주며, 한편으로 대책을 마련해 선박과 화물을 보호함과 아울러 영사관에 통지해 선원을 본국에 돌려보내고 배와 화물을 건져낸 일체의 비용은 선주 혹은 본국이 변제한다.</p>
<p>해군</p>	<p>제7조, (…) 이 밖에 중국의 군함이 조선의 바다 기슭에 와서 순행하는 동시에 각 지방의 항구에 정박해 방어를 도울 때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취소한다. 식량을 사는 것과 운행비용은 모두 군함이 자체로 마련하며, 해당 둔함의 조타수 이하 사람들은 조선 지방관과 평등한 예의로 상대하며, 함장은 성원들이 해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엄격히 단속해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p>	<p>제13조,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의 여부를 막론하고 피차 모두 들어갈 수 있으나 선상에 사사로운 화물을 싣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선상의 각종 식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면세하도록 한다. 그 선상의 선원등은 수시로 상륙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호부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선상에서 사용하던 잡물(雜物)을 되파는 경우에, 그 구매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p>

(1) 해관

청일전쟁 직전까지는 청의 세력이 절대적이어서 조선의 대외관계인 관세 업무는 청의 관장아래 감독하게 되었다. 임오군란 및 갑신정변을 전환점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청의 정치 영향력은 강화되었으며, 또 이에 따라 통상외교에 있어서도 자연 청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임오군란 후에 청 정부는 이런 계기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해관, 세금에 대해 규정했다.

제3조는 두 나라의 상선들은 상대측의 통상 항구에 들어가서 교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신고 부리는 모든 물건들과 해관에 세금을 바치는 일체 문제는 모두 두 나라에서 이미 체결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상대측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만나거나 얇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아무 곳이나 배를 대고 음식물을 사며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일체 비용은 선주가 모두 자체로 부담하고 지방관은 적당히 돌보기만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 외에는 어선에 관한 규정도 기록했다. 상대방의 어선에서 받아야 할 어세는 조약을 시행한 2년 후에 다시 토의해 알맞게 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제4조를 통해 조선은 기존의 개항장인 चे물포, 부산, 원산 이외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한양에 인접한 양화진을 청나라 상인에게 개방했다. 아울러 조선상인 역시 베이징에서 무역 활동이 허가되었다. 제5조에서는 조청 양국은 시장을 여는 자기 측 지방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도전을 감시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해관에서는 홍삼과 수입 금지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5%의 수출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5%의 수입 관세율 조항은 조선이 1882년에 미국,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에서 규정한 수입 관세율의 상한선 10%, 30%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아울러 조선이 일본과 통상장정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평균 10%의 수

입 관세율보다도 낮았다. 이를 통해서 청은 조선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상업상 우월한 특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 통상권리 및 개항장 간 무역 권리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서 청은 조선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상업상 우월한 특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청은 속방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다른 국가의 균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청통상조약」에서는 쌍방의 관세 자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자국의 해관 장정과 세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역 및 관세에 대한 규정은 상대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이 관세 자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한중 간 관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국경 무역에서 일반 수입수출품의 관세를 5%로, 홍삼의 관세를 15%로 규정해 조선 측의 관세 자주권을 부인했던 데 반해, 이 조항을 통해 양국이 관세 자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한청 간 위상변화를 반영하고 있다.⁸⁰⁾ 그리고 관세자주권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약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 조청 간 특권을 폐기하고 최혜국 조항이란 국제규범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운

해운과 관련해, 조선은 경우 오랜 해금정책으로 해운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나라는 청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청 간 해운사업을 확대하였다. 장정 가운데 해운과 관련된 항목인 제7조에는 책문을 통해서만 사행이 이루어졌던 종전 관행을 바꿔서 해로를 통해서 이를 실시할

80) 감종성, 「1899년 한청통상조약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해금 조치의 해제를 요청한 조선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로통상을 위해 운선의 정기 운항과 청 병선의 조선 연해 왕래 및 정박을 규정했다. 아울러 청국 함대가 조선의 항구에 정박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경비를 종전에는 조선의 지방관이 부담했지만, 이 조항에는 이를 변경해 청국이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관철시킨 조약의 관례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이 군사용 기계배나 상업용 기계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초상국의 선박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선과 청을 오가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운선의 정기 운항은 곧바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임오군란 때 출병한 청군 3,000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함이 매월 여러 차례 걸쳐 왕래했으므로 운선의 운항이 시급하지 않았다.⁸¹⁾

항운은 다음해, 1883년 11월 조청 간에 「輪船往來上海朝鮮公道合約章程」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상해-인천 간의 정기 운항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청국 상품이 곧바로 서울로 운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 청국은 결손방지와 조선 측의 관세수입 증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과 「輪船往來上海朝鮮公道合約章程續約」을 맺었다. 이 속약은 항로를 상해-인천 간에서 상해-엔타이-나가사키-부산-인천 간으로 확대하여 청과 조선 일본의 주요 항구로 규정했다. 당시 나가사키에는 많은 청국 상인들이 진출해 수입품을 일본인에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항로의 확장은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⁸²⁾

그런데 이 항로는 3개월만 운항하고 청국이 손해가 많다고 운항중단을 제의하였고, 조선정부가 이에 합의해서 1883년 11월과 12월, 1884년 1월의 세 차례 운항에 그치고 말았다.

81) 나애자, 『한국근대해운업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82) 나애자, 앞의 책, 1998.

앞에 서술했던 것처럼, 임오군란 때 출병한 청군 3,000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 병선이 조선 연해 및 항구 자유왕래권을 가지고, 청이 조선의 해안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1880년대 조선은 해군력이 너무나 미약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조선의 해양방위를 아예 청에 위탁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특권이었다.

청일전쟁 발발 후, 조선과 청국은 약 5년간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폐지되었고 독립국 간의 대등 관계를 명시한 평등조약인 한중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실행했다. 한중통상조약을 보면, 해양과 관련한 항목은 위 표 내용과 같고 다른 조항은 해양 통상 등 다 방면으로 대등하게 규정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영사재판권으로 상징되는 치외법권 규정이 있었고, 청국상인의 통상특권을 보장해 조선 내의 여행 통상권을 차지했으며, 조선-청국 간의 선박 왕래 독점권도 명시하였다. 「장정」의 제7관에는 해로통상을 위하여 초상국 운선의 정기 운항과 청 병선의 조선연해 왕래 및 정박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운선왕래상해조선공도합약장정>을 체결하면서 초상국 운선의 취항은 시작되었다. <합양장정>은 청정부의 상해-운선초상국과 조선정부의 통리각국사 무아문 간에 조선 한성에서 체결했고, 제1관에는 “초상국이 매월 상반기에 운선 한 척을 편안할 때 조선국에 보내 조선과 중국 간의 공문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담당한다.”⁸³⁾로 시작하여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83년 11월부터 부유호를 한 달 한번씩 파견하여 상해-인천 간에 정기 운항시켰다. 그런데 청불전쟁으로 부유호가 다른 초상국 운선과 같이 대만의 해방청으로 징용되었기 때문에 1883년 11월과 12월, 1884년 1월의 세 차례 운항에 그치고 말았다. 마침내 1888년 3월 초상국 광제호 기선의 첫 운항으로 상해-인천

83) 권혁수, 『近代中韩关系史料选编』, 世界知識出版社, 2008.

간 항로가 다시 개설되었다. 초상국 기선 광제호의 첫 번째 항해는 1888년 3월 29일 잡화를 싣고 상해를 떠나 옌타이(煙臺)를 경유하여 31일에 인천에 입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에 1894년 청일전쟁까지 기선이 정기 운항하였다. 1895~1901년까지 조선의 해운은 외국회사가 위탁경영하던 시기였다. 청일전쟁으로 청이 조선에서 구축되면서 조선 최초의 해운 기업인 이운사는 일본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즉 이운사는 일본우선회사에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무력화되었다. 다시 러시아의 등장으로 일본이 견제받자 일본은 조선에게 경영권을 돌려주었으며,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독일의 주한상사인 세창양행에게 위탁하였다.⁸⁴⁾

(3) 해군

해군 관련 항목 내용은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변화의 중요한 근거이다. 그리고 해군 항목은 거의 모든 통상조약에서 다 언급했다. 여기서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과 「한청통상조약」 중에 해군과 관련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조청 관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은 청의 독점적 이익을 강요한 최혜국조약을 원했다. 해양 조항도 마찬가지로, 병선의 조선연해항구자유내왕권 허용, 조선해방의 위임 등 주로 조선에 있어서 청상의 상권확대와 무역침권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정치와 군사 방면도 청의 국방전선을 만들라는 의도를 표출된다. 청은 자국의 군함을 조선의 해빈(海濱)과 개항장이던 미개항장이던 어느 항구에서나 항해 정박할 수 있는 병선조항을 조선에 강요하였다. “중국의 병선은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에 가서 각 항구에 들어가 정박한다.”라고 하는 조문은 청은 조선해방의 대담 조항에 기초, 조선을 청의 국방최전선

84) 손태현, 『韓國海運史』, 曉星出版社, 1997.

즉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다⁸⁵⁾(김정기, 1979)는 것이다. 조선과 청의 종속 관계는 다시 확정되었다.

그 이후 「한청통상조약」 제13조를 보면 양국의 해군에 대한 약정은 많이 달라졌다. 「한청통상조약」의 제13조에서는 선상에 사사로운 화물을 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지 선상에서 필요한 각종 식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명세하였다. 게다가 군함의 순시도 청국만 인정하던 것에서 양국이 서로 인정하였다⁸⁶⁾.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을 비해서, 「장정」에서는 군함의 순시를 청국에서만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약」에서는 양국이 공히 인정한 것이다⁸⁷⁾. 여기에서는 양국 군함이 통상 항구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들어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양국의 군함이 타방의 항구에 자유출입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양국의 대등 관계를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청나라 군함이 조선 해안을 왕래하거나 개항장에 정박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장정」 제7관에 따르면 청 병선의 조선 연해 및 항구 자유왕래권, 청의 조선해방 담당, 청 병선관리관의 인천파견 등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도 해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북양함대(北洋艦隊)의 밑에서 국가제정 적게 쓰면서 자주적인 해방체제를 정립에 노력했다. 해군사관학교 등을 설립하고 수병도 선발하고 점점 자주적인 해방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청통상조약> 중에서 「장정」과 달리, 청국의 해방 보조가 필요없고, 양국의 군함은 대등하게 임무를 맡게 된다고 약정하였다.

85) 김정기, 「병선장정의 강행(1888.2)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1979, 제24집, p.65.

86) 최덕수 외 지음, 앞의 책, pp.358-359.

87) 최덕수 외 지음, 앞의 책, p.363

(4) 조난 구조

「조청상민무역장정」 제3조에는 어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난 구조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한청통상조약」 제10조에서는 양국 선박이 상대국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구호를 위한 협력절차 그리고 해당 선박과 그 선원의 금지 행위와 위반 처벌에 관련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 중에도 조난구조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다. 중국과 영국이 맺은 「난징조약」에는 ‘영국의 선박이 원항 중에 손상된 것을 고치고 물건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항구 하나를 할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수호조규」에서는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태풍을 만나거나 혹은 장작과 식량이 떨어져서 지정된 항구에 도달할 수 없으면 즉시 어느 연안이든지 항구에 들어가 위험을 피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배를 수리하고 장작과 솥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통상조약」 제3조에서는 ‘만약 미국 선박이 조선의 근해에서 바람을 만나거나 혹은 양식·연료·물이 모자라 통상 하구와 매우 먼 곳에 거하면 마땅히 어느 곳이라도 정박해 바람을 피하고 식량을 구매하고 선박을 수리하되 경비는 선주가 스스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조항을 보면 이런 조항은 다 열강 선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조선과 청나라의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난을 핑계로 서양 열강 선박이 미개항장에 들어가 밀무역을 할 핑계가 생기고, 열강들이 조선과 청나라를 침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조선과 청국은 같이 열강을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약」을 보면 양국의 평등관계를 잘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약」 제10관에 양국

선박이 상대국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이 떨어진 경우에는 항구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하고 식량을 구입하며 선박을 수리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모든 경비는 모두 선주가 부담하되 그 지방의 관민은 원조하여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으며, 만일 해당 선박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 및 왕래가 금지된 곳에서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미수, 기수를 불문하고, 지방관청 및 부근의 해관 관원이 선박을 나포하여 화물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원가의 배로 벌금을 물린다. 양국의 선박이 상대국 해안에서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관청에서 선원을 우선 구호하고 양식을 공급해 주며, 한편으로 대책을 마련해 선박과 화물을 보호함과 아울러 영사관에 통지해 선원을 본국에 돌려보내고, 배와 화물을 건져낸 일체의 비용은 선주 혹은 본국이 변제한다.⁸⁸⁾ 여기서의 열강들의 조약과 달리 양국에 공히 인정한 것이다.

(5) 어업

근대에 편입되면서 조선의 바다는 열강이 세력을 다투는 분쟁의 장이 되었다. 조선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강에게 침탈당하고 있었다. 조선과 청의 수산자원은 2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줄곧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 시기까지 분쟁이 많았다. ‘월경어채(越境魚採)’문제는 조선의 해양방어를 무력화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발전했다. 청나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들을 ‘어채비민(魚採匪民)’으로 규정하여 산둥과 봉천 연해에 대해 대대적인 통제를 명했다. ⁸⁹⁾

88) 최덕수 외, 앞 책. 김지형, 「대한국과 대청국, 대등 조약을 체결하다」, p.358.

89)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 분쟁-1882년 ‘조청무역장정’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이 문제에 대해 장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장정이 체결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3조에는, 양국 상선의 개항장 출입과 무역 허용 및 관세와 관련된 내용 말고 조난선박의 구조의무 관련 규정도 담았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분에는 어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조선의 평안도와 황해도, 청국의 산둥성(山東省)과 봉천성(奉天省) 등의 연해 지방에서 양국의 어선이 왕래하면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90) 조선 측의 어선이 청나라 어선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지정된 지역의 연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상호 평등한 조치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연해에서 활동하는 조선 어선보다 조선 연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훨씬 많았다. 당시 조선 어민의 어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선의 해양에서 청 어선이 횡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은 결국 청의 일방적인 권리행사일 수밖에 없었고 조치는 사실상 청인 어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91) 그리고 「장정」 제3조에 의하면, 두 나라의 고깃배들이 평등하게 왕래할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동시에 해안에 올라가서 음식물과 음료수를 살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사적으로 물건을 장사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몰수한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지방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해 가까운 곳의 상무위원에게 넘겨주어 제2조에 준해 처리한다. 상대방의 어선에서 받아야 할 어세는 조약을 시행한 2년 후에 다시 토의해 알맞게 정한다. 조사에 의하면 해변의 물고기들이 기계배에 놀라서 대안 쪽으로 쏠리자 해마다 황해도의 대청도와 소청도에 불법적으로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산둥성 어민들이 한해에도 1,000명을 헤아렸다. 92)

90) 최덕수, 앞의 책, p.114.

91) 최덕수, 앞의 책, 「중국, 속국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한승훈, p.109.

청나라는 청일전쟁에 패배한 후, 조청은 단결한 사이에, 1888년 6월 일본은 조선과 인천해면잠준일본어선포어액한규칙(仁川海面暫準日本漁船捕漁額限規則)을 체결하여 인천연해에서의 어업을 허가받았고 어업권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한청통상조약」에서는 어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

1894-1910년까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청국어민들의 어업활동이 불법화되고, 일본의 우위가 확립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 전에 맺은 조약들이 모두 폐기되자 청국어선들이 한국해양에서 조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1882-1894년의 합법적 어업활동시기가 끝나고 불법적인 어업시기로 전화된 것이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어선이 대거 밀려오자, 청국어민의 어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법어업의 규모는 여전히 상당했다. 93) 청국어민들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밀어를 행했는데, 점차 일본 어업업자들에 의해 밀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94) 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1901년의 일이다. 이 해에 청은 어업협정을 맺으려고 시도했지만, 한국정부의 거부로 끝내 실패했다. 95) 한국 정부의 거부에서도 양국의 관계 변화를 보일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청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 되었음을 나타낸다.

92) 최덕수, 앞의 책,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제3관, pp.113-114.

93) 김문기, 「기후, 바다, 어업분쟁-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 『中國史研究』, 中國史學會, 2009, 제63집. p.70.

94) 이영학, 「개방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995, 제18기, p.159.

95) 김문기, 앞의 논문, p.115.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과 청이 조약을 통해서 양국이 어떠한 해양관련 조항을 맺었으며, 양국 간의 해양 관계가 각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 전통적인 조청 관계가 타파된 후 양국에 어떤 관계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양국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초점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청통상조약」의 체결은 한국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한국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청통상조약」의 체결은 한국에게 중대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한청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그 때의 한국이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요구를 잘 나타냈다. 「조약」의 역사적 의미는 은정태(2005)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 한청조약의 체결은 전통적인 동아시아국제질서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었으며, 2) 독립협회의 활동과 맞물려 한청조약의 협상에는 관료, 지식인, 언론 등의 자주의식이 담보된 여론이 형성되었다. 3) 한청조약은 대한제국의 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따르는 가운데 체결되어 대한제국이 1901~2년에 체결한 조약의 모델이 되었다. 4) 한청조약의 체결 후 한청관계는 서양열강에 대한 청국의 분할 가능성과 러일개전 가능성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한청조약은 대한제국이 간도에 대한 영토화 의지 속에 간도시찰관을 파견하여 현지 인민들을 보호하고 과세하는 등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를 던졌다.

조선과 청국은 역대 여러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중에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한청통상조약」은 대표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조약을 통해서 두 나라의 관계 변화가 잘 보이기 때문이다. 「장정」부터 청일전쟁이후 「조약」까지 조선과 청국이 체결했던 조약의 내용

은 해관 관세, 해운, 어업, 조난구조, 해군 등이 포함된다.

임오군란 및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변화를 계기로 하여 청국 정부는 대한의 상권을 더 확장하려고 하였으며 청국 상인의 대한 수출도 본격화되었다. 청은 상병정책, 해관지배정책 등을 수단으로 청국 상인이 이익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과 조선이 종주국과 속방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장정」 체결 당시 청측은 속방조항을 넣어 간접적으로 조선이 근대 국제법상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⁹⁶⁾ 「장정」을 통해서 청은 조선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특권을 획득하였다. 관세에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우월한 특권을 얻었고, 청국의 군함은 여전히 조선의 연안에 갈 수 있고 어업 활동은 상호 평등한 조치로 보이도록 청나라의 지정된 지역의 연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청국 연해에서 활동하는 조선 어선보다 조선 연해에서 활동하는 청국 어선이 훨씬 더 많았으며, 조난구조도 물론 상호 조난구조 역시 상호 구조를 약속했지만 조선에서 상업 활동이 더 많이 벌어지는 청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청국의 국력도 약해졌고 조선에 대한 통제도 약해졌다. 양국은 종속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변화했다. 「조약」에서는 양국의 관세 자주권을 규정하였고, 양국의 군함이 타방의 항구에 자유출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양국 관계의 변화는 조선과 청이 체결한 조약의 조항의 비교를 통해서 더 잘 보인다.

어떤 나라든지 외교를 하는 이유는 교류는 하나의 측면인데 이익의 획득은 더 큰 목적이다. 이런 이익은 경제에서 더 잘 보인다. 「장정」에서 중

96) 구선회, 「조선의 근대화를 막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조약으로 보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2, 제9집, p.247.

국이 획득한 많은 특권 가운데 특히 중요한 내용은 중국 상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런 특권은 조선 상인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이다. 자기 나라의 국민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청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고 돈을 벌고 청국으로 보내는 것은 조선 나라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성철잔’의 호소 소리는 점점 커졌다. 조청 무역 관계의 변화는 청일전쟁 이후에 제일 뚜렷하다. 청일전쟁의 발발로 ‘무역장정’은 실제로 무너졌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1894년에 <보호청상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명예는 “보호”이지만 실제에는 청국 상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어업 중요시된 그 시대에는 국가는 어업을 잘 키우는 노력도 많이 한다. 그 외에는 군사는 한 나라의 바침이다. 해군의 힘과 권력도 한 나라의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였다.

고종 때부터 서양 나라들은 개방되었으며 다른 나라로 침투하는 욕심은 점점 나타냈다. 근데 조청양국은 구체를 고집하고 해금령(海禁令)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 열강들의 침략을 따라서 양국도 개해금(開海禁)을 시작하였다.

이런 조청 관계의 변화는 1894년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조청 관계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근대사상에 조청간의 조약이나 조청은 열강들과 맺은 조약이 많이 있는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한청통상조약」은 조청 관계 변화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약이다. 경제는 언제든지 영원히 한 나라의 명맥이며, 이 시기도 마찬가지다. 한청 간 이 시기에 변화된 현안이 많은데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재한청상의 상업 활동 제체였다. 청상은 조선 사람이 할 만한 일을 모두 하고 돈을 모은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로 비취졌다.⁹⁷⁾ 청상의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는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에서 용인된 한성행잔과 내지행상 조상이었다. 「장정」에 따르면, 조선 시장을 청국에 고스란히 내어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청일 전쟁의 발발로 「장정」가 폐지되었고, 조선 정부는 1894년 <보호청상규칙>을 제정하여, 통상을 목적으로 한 청상이 내지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금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1899년 「한청통상조약」은 청국의 상인의 활동 권한에 대해서 다시 규명하였다. 청상이 호조(護照)를 발급받아야만 내지에서 매매활동을 인정하였는데 내지에서의 ‘坐肆매매’는 계속해서 금지하였다.

청일전쟁 후 약 5년간 조선과 청국은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다. 그 전에 조선과 청은 체결한 많은 조약은 폐지된 상태이며, 조선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 중에서 한성철잔(撤棧)은 조선 정부가 가장 주력한 사안이었다.

청국의 한성철잔 협상은 한성에서의 조선 상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고리였다. 한성철잔 문제는 갑신정변 후 조선정부가 청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전상인들이 철시투쟁으로 관철하려 했던 사안으로 청국의 거부로 미해결 상태에 있었다.⁹⁷⁾ 청일전쟁 이후 조청은 무조약 상태였으며, 청국

97) 『독립신문』 1896, 5.21, 논설. (참고문헌에 첨가)

98) 은정태,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2005, 제186집, p.37. 1885년 이후 한성철잔 문제를 둘러싼 한청간의 교섭에 대해서는 김경태, 「갑신·갑오기에 상권회복문제」 『한국사연구』50·51합(1985);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67(1989). 1890년 2월 고종은 이흥장에게 한성의 화상행잔(華商行棧)을 용산으로 옮기도록 요청하는 자문을 보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4조에 중국 상민이 한성에서 개잔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국(諸國)들이 한성 통상을 일체균점하게 되었다는 것, 한성에는 중국 상민 외에 일본인의 행잔이 가장 많으며 양상들의 점포가 날마다 불어나 시민들이 실이(失利)하여 변동할 것을 호소한다는 것, 1885년 겨울에 조선 外과衙門 袁世凱 사이에 한성 화상들의 행잔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나 조선에서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연되었다는 것, 각국과의 선후속조에 ‘중국 상민이 한성에 들어와 행잔을 개설한 것을 철폐하며 이를 따라서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논리는 한청조약 협상과정에서 한성 철잔안 관철을 위한 한국측의 논리로 차용되었다.

은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주한영관(駐韓英館)에 재한청상(在韓淸商)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1894년 11월에 제정된 「保護淸商規則」은 청상 거주지의 제한, 내륙진입 금지, 거주지 등록, 군수물자 취급금지, 청상내한 제한, 불법청상 단속, 청상의 범죄를 조선 측에서 판결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보호라기보다는 규제가 목적이었다.⁹⁹⁾ 여기까지 봐도 조선은 다시 청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양국은 평등한 국가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 한국은 종속국에서 자유국으로 변화되었다.



99) 은정태, 앞의 논문, p.30.

참고문헌

사료

최덕수, 김소영, 성숙경, 한승훈, 김지형,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2011, 09.

褚德新, 梁德, 『中外约章汇要』, 黑龙江人民出版社, 1991.

王铁崖, 『中外旧约章汇编』, 三联书店, 1957.

연구서

손태현, 『한국해운사』. 위드스토리. 2011.

나애자, 『한국근대항운사연구』, 서울국학자료원, 1998.

김종원, 『근대 동아시아의 해양관계사 연구』, 혜안출판사. 1999.

侯傑, 『紫禁城下之盟：天津條約, 南京條約』,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李育民·李傳斌·劉利民, 『近代中外條約研究綜述』, 湖南人民出版社, 2011.

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台北中央研究院, 1972.

郭衛東, 『轉折：以早期中英關係和〈南京條約〉爲考察中心』, 河北出版社, 2003.

李育民, 『近代中國的條約制度』, 湖南師範大學出版社, 1995.

郭壽生, 『各國航業政策實況与收回航權問題』, 華通書局, 1930.

權赫秀,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 世界知識出版社, 2007

연구논문

김종원, 「근대 동아시아의 해양관계사 연구」, 서울해안출판사 1999.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010, 제23집.

권석봉, 「한청통상조약의 체결」, 『東方學志』.

韓圭茂, 「淸·朝鮮間 宗屬關係의 변화와 列強의 태도」.

이은자, 「청말주한상무서조직과 그위상」, 『명청사연구』, 2008, 제30집.

이재석, 「한청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11, 제9집.

김종성 「1899년 한청통상조약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 분쟁-1882년 ‘조청무역장정’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羅愛子. 「開港後 淸·日의 海運業浸透와 朝鮮의 對應」, 1998. 『梨花史學研究』, 梨花女子大學校史學研究所, 1988, 第17期.

김정기, 「병선장정의 강행(1888.2)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979, 제24집.

은정태,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2005, 제186집.

구선희, 「조선의 근대화를 막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내일을 여는 역사』, 2002, 제9집.

김문기, 「기후, 바다, 어업분쟁-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 『중국사연구』, 2009, 제63집.

이영학, 「개방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995, 제18집.

王秀英, 「近代中國海權意識的覺醒」, 『辽宁青年管理幹部學院學報』, 1999, 第三期.

李濤, 「从〈江华島條約〉簽訂窺探中、朝、日三國關係變化」, 『延邊教育學院學報』, 2010, 第3期.

田豫東, 「〈美朝修好通商條約〉與〈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的訂立及其異同比較」, 『韓國學論文集』, 2005.

郭衛東, 「近代中國權益喪失的另一種因由——領事裁判權在華確立過程研究」, 『近代史研究』, 1997, 第2期.

陳曉東, 「試評〈劍橋中國晚清史〉的南京條約觀」, 『開放時代』, 1987, 第6期.

陳詩啓, 「中國近代海關史總述之一：中國半殖民地海關的創設及其鞏固過程(1840-1875)」, 『廈門大學學報』, 1980, 第1期.

林希, 「〈中日修好條規〉的簽訂及其意義」, 『今日科苑』, 2011, 第10期.

權赫秀,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會編, 『中國朝鮮史研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9, 第1輯.

高秉希, 「晚清中朝定期航線的開設背景及其影響」, 『史學月刊』, 2006, 第1期.

王蕾，「圍繞「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有關問題的再探討」，『韓國學叢書』，2002，第9輯。

宋慧娟，「論清政府與〈朝美修好通商條約〉的締結」，『吉林省教育學院學報』，2007，第7期。

張京梅，「朝美通商條約的簽訂及其對中朝日關係的影響」，『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2，第2期。

黃湛，「略論中韓通商條約簽訂前後清與朝鮮的關係」，『中國邊疆史的研究』，1997，第2期。

